

서울특별시 조례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346호

나. 제 안 자 : 경만선 의원 외 1명 (찬성의원 9명)

다. 제안일자 : 2019년 1월 29일

라. 회부일자 : 2019년 1월 31일

2. 제안이유

- 법치국가에서 법 문장은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하여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한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함으로 법제처 등의 기관에서는 지속적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마련하여 법률 전문가 중심의 문화를 시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고자 노력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조례의 규정도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등의 어문 규정을 충실히 따르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본 입안 취지 또한 제명의 띄어쓰기를 한글 어문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표기하도록 개정하여 시민의 조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조례 제명을 한글 어문 규정에 따라 띄어쓰기 하도록 함
(안 제2조~제55조).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조례안의 개요

- 조례안은 한글 어문 규정에 따른 정확한 띄어쓰기를 제명에 일괄 반영하여, 조례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임.

나. 자치법규 일괄개정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변경, 관계 법령 개정 등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적시에 모두 조례에 반영하기 어려울 때는, 개정취지가 같거나 비교적 사소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일괄정비 형식의 조례안을 통해 입법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도모하고 있음.
- 조례안은 제명의 띄어쓰기 정비를 위한 것으로 일괄정비안의 목적에 부합하나, 최근 일괄정비안의 발의 건수가 증대되는 추세인 만큼 소관 상임위원회 고유의 심사 권한 침해 방지를 위해 최소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다. 조례안의 일괄정비 사안

- 조례안은 각 조의 조례 제명을 “조례” 앞에서 반드시 띄어 쓰도록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 “지원조례” → “지원∨조례”, “기본조례” → “기본∨조례” 등
- 한글맞춤법에 따르면 성명 이외의 고유명사, 전문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쓰기를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도 있음.
- 또한 법제처의 ‘법령이름 띄어쓰기 기준’ 상 법령 이름은 단어별로 띄어 쓰되, 명사(복합명사)만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최대 8음절까지 붙여 쓸 수 있으며, ‘기본법’, ‘특별법’, ‘특례법’ 등은 붙여 쓰도록 규정하고 있음[참고자료1].
- 현재 자치법규 제명의 띄어쓰기는 ‘법령이름 띄어쓰기 기준’을 참고하여 적용할 뿐, 별도의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음.
- 동일한 문구의 조례 제명에도 다른 띄어쓰기가 다수 존재해¹⁾ 혼란을 초래하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제명의 띄어쓰기 기준을 통일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하며, 조례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임.
- 서울시 또한 조례안에 대해 제명의 용어나 의미가 변경되지 않아

1) 「서울특별시 산업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조례」 등

이에 따른 혼란 발생 소지가 적다고 판단, 일괄개정안을 수용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이밖에 “조례” 앞 띄어쓰기 외 안 제25조, 제30조, 제43조, 제49조는 다음과 같이 단어별로 띄어 쓰고자 하는 것으로, 어문 규정의 일반 원칙과 시민들의 가독성 측면에서 개정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
| 안 제25조 | 서울특별시 <u>수도시설이설</u> 등 원인자부담금 <u>징수조례</u> | 서울특별시 <u>수도시설 이설</u> 등 원인자부담금 <u>징수 조례</u> |
| 안 제30조 | 서울특별시 <u>시세감면조례</u> | 서울특별시 <u>시세 감면 조례</u> |
| 안 제43조 | 서울특별시 <u>주거기본조례</u> | 서울특별시 <u>주거 기본 조례</u> |
| 안 제49조 | 서울특별시 <u>택시기본 조례</u> | 서울특별시 <u>택시 기본 조례</u> |

- 한편 조례안을 통해 수정되는 54개의 조례 제명 중 일부는 타 조례의 본문에서 인용되고 있으므로, 인용 조문에 대한 수정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이번 일괄정비에 일부 반영하지 못한 조례 제명을 입법 취지에 맞춰 함께 정비해야 할 것임.

| | |
|--------|--------------|
| 담당 조사관 | 연락처 |
| 김나래 | 02-2180-8057 |

[참고자료1] 법령이름 띄어쓰기 기준

- 단어별로 띄어 쓴다.

예시) 박물관 ∨ 및 ∨ 미술관 ∨ 진흥법

- 명사(복합명사)만으로 이루어진 법령 이름은 최대 8음절²⁾까지 붙여 쓸 수 있다.

- 예외적으로 8음절을 초과하는 복합명사로 이루어진 조직, 단체 또는 기금의 명칭을 포함하는 법령 이름은 붙여 쓸 수 있다.

예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등 하위법령임을 나타내는 명칭은 띄어 쓴다.

예시) 아동복지법 ∨ 시행령

- ‘기본법’, ‘특별법’, ‘특례법’ 등 법률의 성격을 나타내는 명칭은 원칙적으로 띄어 쓴다.

예시) 고용정책 ∨ 기본법

- 법령 이름 띄어쓰기 권고안(작성 기준일: 2017. 12. 1.)

- 법령 이름이 아직 한글화가 되지 않았거나 띄어쓰기가 되지 않은 법령 이름을 인용할 때에는 아래 ‘권고안’으로 개정되기 전이라도 ‘권고안’과 같이 인용한다.

- 법령 이름이 아직 띄어쓰기가 되지 않았거나 띄어쓰기가 되었더라도 적절하지 않게 되어 있는 법령 이름은 그 법령을 일부개정하거나 전부개정할 때 아래 ‘권고안’에 따라 법령 이름 띄어쓰기를 적용하여 개정한다.

2) 일반적으로 사람이 한 번에 독해할 수 있는 적절한 음절의 수는 8음절 내외

[참고자료2] 일괄개정안 조항별 제명 인용 조례 현황

| 구분 | 제명 | 인용 조례 |
|-----------|------------------------------|---|
| 안 제4조 |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조례」 |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생략).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제5조에 따른 건축기본계획 또는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6조에 따른 도시디자인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 | |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7조(적용범위) 2.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제2조제1호의 공적공간 |
| 안 제5조 |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6조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의 수립) ③ 시장은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경관조례」에 따라 수립된 경관계획 및 도시디자인 관련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의 설치) 4.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제25조 제2항제2호에 따른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심의사항(단, 야간 경관 시설은 제외) |
| 안 제7조 |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22조(공무원의 해외도시 등 근무) ④ 제1항에 따라 해외 도시 등에 근무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재외공무원 복무 규정」,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등을 준용한다. |
| 안 제12조 |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 「서울특별시 육교 사용료 징수 조례」 제9조(사용기간 및 사용료) ⑤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의 예에 따른다. |

| | | |
|---------------|--------------------------|---|
| | | <p>「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사용료 감면 등) 시장은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서울특별시 하천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상인이나 고객이 이용하는 공동 시설 또는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한 공유지의 사용료, 대부료,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서울특별시 서울로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편의시설 설치·운영) ② 시장은 제1항의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준용하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p> <p>「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점용료 등 부과·징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운영자에게 점용료 및 대부료를 부과·징수한다. 1. 점용료 :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산정된 금액 2. 대부료 가. ~나.(생략)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점용료 및 대부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점용료의 경우에는 「도로법」 및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를, 대부료의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따른다.</p> |
| <p>안 제16조</p> | <p>「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p> | <p>「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40조(무형문화재의 교육지원 등)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8조에 따라 시가 주관하는 교육이나 강좌에 전승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

| | | |
|-------------------|------------------------------------|--|
| | | <p>「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기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을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p> <p>「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7조(지역균형발전 시책 반영)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5.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13조에 따른 문화 시민도시종합계획</p> <p>「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예술인 복지 증진 위원회)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문화 도시 기본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의 분과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p> |
| <p>안 제17조</p> | <p>「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p> | <p>「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물 재이용 정책에 관한 심의·자문) 물 재이용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 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21조에 따른 물순환 시민위원회의 심의·자문에 따른다.</p> |
| <p>안 제22조</p> | <p>「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p> | <p>「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14조에 따른 여성위원 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p> <p>「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중소·벤처기업 등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 벤처기업,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의 입주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지정·설립할 수 있다. 3.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16조에 따른 여성의 취업, 창업 및 기업활동 참여와 여성인력개발 활성화를 위한 시설</p> |

| | | |
|---------------|-------------------------------------|--|
| | | <p>「서울특별시 산업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19조(산업단지 지원)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 내·외의 시설 조성·확충 지원 시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른 성평등한 도시공간 및 시설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p> <p>「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 제47조 및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2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여성관련시설을 설치 및 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를 장려하여 여성의 권익을 증진하고 성평등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p> <p>「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14조를 준수하여야 한다.</p> |
| <p>안 제25조</p> | <p>「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p> | <p>「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원인자부담금) ⑥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징수방법, 이의신청은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에 따른다. 이 경우 "수도공사"는 "급수공사"로 "수도시설"은 "재처리시설"로 본다.</p> <p>제47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급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및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를 준용한다.</p> |
| <p>안 제26조</p> | <p>「서울특별시 수도조례」</p> | <p>「서울특별시 공업용 수도조례」 제9조(다른 조례의 적용) 이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의 규정을 따른다.</p> <p>「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7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급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및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를 준용한다.</p> |

| | | |
|--------|------------------|--|
| | | <p>「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4조(부담금 산정기준) ② 제3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등을 적용한다.</p> <p>2. 퇴수 또는 누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양에 대한 비용산정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별표2의 수도요금 요율표에 따른다.</p> <hr/> <p>「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관리) ④ 제1항에 따른 음수대의 청소 등 위생관리, 고장 및 철거 등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이하 "수도조례"라 한다) 제3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을 철회할 수 있다.</p> <hr/> <p>「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신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p> <p>1.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에 의한 급수사용 개시 신고</p> <p>제23조(사용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하수도사용요금의 산정 및 세대분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6조 및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
| 안 제27조 |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 <p>「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제8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 ① 시장은 법 제38조제3항 및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법 제38조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법 제35조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제36조에 따른 정정·삭제의 요구,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등의 요구(이하 "열람 등 요구"라 한다)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열람 등 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시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p> |

| | | |
|-------------------|----------------------------|---|
| | | <p>「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조례」 제3조(수입증지요금계기 등에 의한 납부)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 라 한다)에 납부하는 다음 각호의 수수료 등은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토록 할 수 있다.</p> <p>4.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에 의한 수수료</p> |
| | | <p>「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6조(비용의 부담)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금액 및 징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u>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u>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p> |
| | | <p>「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9조(수수료) ② 영 제33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 방법 및 환급절차는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조례」 및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p> |
| <p>안 제28조</p> | <p>「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p> | <p>「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제7조(신체활동증진 위원회의 구성 등) 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시민건강위원회에서 대신한다.</p> <p>「서울특별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 및 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제10조(분야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②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종합계획은 각 호와 같다.</p> <p>3.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또는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에 따른 시민건강관리종합계획</p> <p>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③ (생략)</p> <p>5.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에 따른 시민건강위원회 위원장 혹은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p> |

| | | |
|-------------------|-----------------------------|--|
| <p>안 제30조</p> | <p>「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p> | <p>「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우수건축자산의 시세 감면 및 기술 지원) ① 우수건축 자산에 대한 시세 감면은 법 제12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에 따른다.</p> <p>제26조(세제 등의 감면 및 생활환경개선 노력) ① 시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옥(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에 따라 취득세 등 시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제14조(시세 등의 감면) ②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과 재산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등 시세를 감면할 수 있고, 개별 조례에 따라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p> |
| <p>안 제33조</p> | <p>「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p> | <p>「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6조(아동 참여위원회 등) ③ 아동 참여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 제50조에 따른 어린이·청소년참여 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p> <p>「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제9조(실태조사)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 제66조에 따라 실시하는 인권실태 조사로 대신할 수 있다. (생략)</p> <p>「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청소년참여예산"이란 청소년이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24조제7항에 따른 권리에 따라 참여한 예산을 말한다.</p> |
| <p>안 제36조</p> | <p>「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p> | <p>「서울특별시 디지털미디어시티 지원 조례」 제10조(외국인투자기업 지원) 시장은 디지털미디어시티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주 촉진을 위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지역을 지정하여 개발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제13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p> |

| | | |
|-----------|---------------------|---|
| | | <p>「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외국인투자기업 지원) 시장은 마곡산업단지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주촉진을 위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지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제13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p> |
| 안 제38조 |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 | <p>「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7조(지역균형발전 시책 반영)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4.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 제4조에 따른 일자리 정책 기본계획</p> |
| 안 제42조 |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 <p>「서울특별시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5조(사물인터넷도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한다. 제6조(자문단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의 기능을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 대신하게 할 수 있다.</p> <p>「서울특별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조례」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정보화기본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정보화전략위원회에 스마트도시 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
| 안 제43조 |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 <p>「서울특별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 및 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제10조(분야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②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종합계획은 각 호와 같다. 4.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에 따른 주거복지기본계획</p> <p>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③ (생략) 6.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에 따른 주거복지위원회 위원장 혹은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p> |

| | | |
|-------------------|------------------------------|--|
| | | <p>「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지원주택 공급 기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제4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p> <p>「서울특별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주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제4조에 따라 수립하는 주거종합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5조(주거실태조사)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거실태조사를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제6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p> <p>「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11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시장은 청년주거정책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 및 <u>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u>에 따른다.</p> |
| <p>안 제44조</p> | <p>「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p> | <p>「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48조(부설주차장 및 미술장식품설치 등) ①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에 관하여는 「주차장법」·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제3조(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생략) 2. 영 별표 1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지역"에 건설되는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주택과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및 용도변경</p> |

| | | |
|--|--|---|
| | | <p>「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7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p> |
| | | <p>「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10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대한 특례) ② 영 제2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주차장설치기준의 완화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제한지역으로 간주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1조제2항의 범위까지 완화할 수 있다.</p> |
| | | <p>「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③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5조의2제3항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 설치기준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한다.</p> |
| | | <p>「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8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p> |
| | | <p>「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⑥ 제5항제1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제5항제2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

| | | |
|-----------|---------------------|---|
| 안 제45조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 <p>「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사무기구와 소속 직원) ① 위원회 산하에 사무기구와 소속 직원(이하 "감사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을 두며, 그 조직과 정원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따른다.</p> |
| | | <p>「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14조(사무기구와 소속 직원 등) ① 위원회 산하에 사무기구와 소속 직원(이하 "감사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을 두며, 그 조직과 정원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따른다.</p> |
| | | <p>「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제6조(직원의 정원) 사무처에 두는 직원의 정원 및 직급별 정원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
| | | <p>「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기구·정원의 조정) ① 기관장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의 범위 내에서 책임운영기관 하부조직의 설치 및 직렬을 변경할 수 있으며, 기구 및 직렬의 변경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
| 안 제46조 |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 <p>「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7조(지역균형발전 시책 반영) ② (생략) 2.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4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p> |
| 안 제47조 |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 <p>「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제8조(설치 및 기능) (생략) 6.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서 정한 지역개발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p> |
| 안 제48조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 <p>「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청년공간의 사용 등) ② 청년공간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 또는 청년단체</p> |

| | | |
|-------------------|------------------------------|--|
| <p>안 제52조</p> | <p>「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p> | <p>「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적용범위) (생략)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p> |
| | | <p>「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에게 교통정보를 신속히 전달하여 시민생활 편익을 증진하고, 유익한 생활정보 및 건전한 문화·예술 을 보급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05조에 따라 설치한 서울특별시 교 통방송(tbs)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
| | | <p>「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적용범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p> |
| | | <p>「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그 밖의 도시계 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리한다.</p> |
| | | <p>「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① 법 제9조에 따라 도시재생 전략계획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을 지원하고 관계 부서 및 기관 간의 협의 등을 위하여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기 위해 설치하는 전담조직 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도시재생본부’ 로 한다.</p> |

| | | |
|-----------|-----------------|--|
| | | <p>「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제8조(수수료의 면제)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p> <p>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검사·시험을 의뢰하는 경우</p> <p>「서울특별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략) 가. (생략) 나.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0조에 따른 소방재난본부장의 분장사무 및 제36조·제39조·제43조·제46조·제49조에 따른 소관사무</p> <p>「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기구·정원의 조정) ① 기관장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의 범위 내에서 책임운영기관 하부조직의 설치 및 직렬을 변경할 수 있으며, 기구 및 직렬의 변경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
| 안 제53조 |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조례」 | <p>「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47조(서울특별시시민상수상자 특전)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조례」 제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건축상을 수상한 건축물 설계자는 「건축사법」에 따른 처벌규정을 적용할 경우 「건축사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p> |